

신구조문 대조표

3-4-4 기숙사 운영규정

현 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<p>제20조(경비) 사생은 기숙사 입퇴사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기숙사비를 납부 또는 환불받는다.</p> <p>2. 퇴사시는 입사비를 제외한 입사보증금, 잔여 관리비를 환불받으며, 관리비 환불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사 개시 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사개시일 ~ 12주 경과 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부터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잔여관리비(잔여사용일수×1일 관리비)의 10% 공제 후 반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반환하지 않음</td> </tr> </table> <p>단, 당연퇴사의 경우는 잔여관리비(잔여사용일수×1일 관리비)의 50%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.</p>	학사 개시 전	학사개시일 ~ 12주 경과 전	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부터	전 액	잔여관리비(잔여사용일수×1일 관리비)의 10% 공제 후 반환	반환하지 않음	<p>제20조(경비) 사생은 기숙사 입퇴사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기숙사비를 납부 또는 환불받는다.</p> <p>2. 퇴사시는 입사비를 제외한 입사보증금, 잔여 관리비를 환불받으며, 관리비 환불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사 개시 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사개시일 4주경과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사개시일 4주 경과 후 8주 경과 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사개시일 8주 경과 후 12주 경과 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사개시일 12주 경과 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 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/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/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/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반환하지 않음</td> </tr> </table> <p>단, 당연퇴사의 경우는 잔여관리비(잔여사용일수×1일 관리비)의 50%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.</p>	학사 개시 전	학사개시일 4주경과전	학사개시일 4주 경과 후 8주 경과 전	학사개시일 8주 경과 후 12주 경과 전	학사개시일 12주 경과 후	전 액	3/4	1/2	1/4	반환하지 않음
학사 개시 전	학사개시일 ~ 12주 경과 전	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부터															
전 액	잔여관리비(잔여사용일수×1일 관리비)의 10% 공제 후 반환	반환하지 않음															
학사 개시 전	학사개시일 4주경과전	학사개시일 4주 경과 후 8주 경과 전	학사개시일 8주 경과 후 12주 경과 전	학사개시일 12주 경과 후													
전 액	3/4	1/2	1/4	반환하지 않음													